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94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서범수 · 김소희 · 이현승
박충권 · 김종민 · 우재준
권영진 · 김장겸 · 조은희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주말·체험영농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반 국민들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포함)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4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내의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포함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말·체험영농 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②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u><신 설></u>	<u>가.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u>
<u><신 설></u>	<u>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4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체험영농지역 내의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포함한다)</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② (생략)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④ ~ ⑦ (생략)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u>시・도지사는</u>-----
② (생략)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②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④ ~ ⑧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말·체험영농 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